

신청기관 : 국방부 규제개혁담당관실

일본의 군사사법(司法)제도에 관한 소고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와 관련법제 검토를 중심으로-

노기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I. 들어가기

지금의 일본 국민에게는 군법회의(군사재판소)라는 것은 낯선 존재이다. 그러나 한때 일본에서는 육군 및 해군 각각에서 군법회의가 설치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러한 군법회의가 폐지되었고, 경찰예비대에서 보안대를 거쳐 자위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군사에 관한 사법기관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행 일본의 자위대와 관련한 방위(군사)사법제도는 다른 나라의 군사사법제도와는 크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방위사법제도가 따로 없는 일본의 경우에는 사고·사건은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수사·입건되고, 일반적인 사법재판소(형사법원)에서 심리되어져 판결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나라의 군대는 통상「군형법」에 근거해서, 「군사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⁰¹

이렇듯 일본의 자위대 대원에 대한 군사법원에 의한 통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이하에서 군사법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대원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사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덧붙여 과거 일본의 군법회의(군사재판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폐지가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01 西村峰裕「わが国における軍事司法の可能性」産大法学(京都産業大学)第39巻第1号(2005年)1-3頁。

II. 군사사법제도의 개관

1. 군사사법제도의 의의

원래 군사재판소는 군의 자율성에서 유래한다. 군대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 주 임무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군대에 소속하고 있는 자는 개인·집단으로서 엄정한 규율과 질서의 유지가 필요하다.

군사사법제도는 군대의 규율유지를 위해 군대의 구성원의 군사관계 그 외의 범죄를 일반의 사법제도와는 별도의 법체계에 의해 처리할 필요에서 생겨난 제도이며, 균형법에 의한 처리방향이 정해져 군사재판소 등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처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군사사법제도는 일반형법과는 별도의 균형법에 의한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 군대가 독자적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특별법인 균형법이 우선된다. 한편, 군사(軍事)와 무관계인 일반범죄는 일반 사법 재판소의 관할이 된다.⁰²

2. 군법회의(군사재판소)의 개요

개별 국가는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군사재판소(Military Tribunal)로서 군법회의(Court Martial)는 군인, 군속 등의 규율위반·범죄행위를 재단하는 법정으로(군사재판), 일종의 특별재판소이다.

군대고유의 형법이 군대의 특수성으로부터 구해진 이상, 그 적용·위반에 대한 재판도 군대고유의 절차에 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군법회의개최의 결정은 통상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기관의 장 또는 상급부대지휘관이 행한다. 군법회의는 일반의 형사재판절차보다 신속하고 약식인 특징이 있다.

한편, 비교적 경미한 규율위반·비행은 사법절차와는 별개의 지휘관 등에 의한 징계벌을 과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에 머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일종의 징계처분의 근거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무규율을 군대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⁰³

02 奥平穰治「防衛司法制度検討の現代的意義 -日本の将来の方向性-」防衛研究所紀要(防衛省)第13巻第2号(2011年) 118-119頁。

03 奥平穰治, 前掲論文, 119-120頁。

3. 군형법 및 군법회의의 필요성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형벌과 징계처분은 이론적으로 구별이 된다. 징계처분은 형벌과 병과 하여 과하는 것도 가능하다.⁰⁴

그러나 군대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반사회성'과 관계없이 형벌을 과하게 된다. 징계처분과 형벌은 군기 유지가 목적이기에, 이론적으로 그 구별이 애매하다. 기본적으로 징계처분과 형벌은 병과 할 수 없다고 본다.⁰⁵

한편, 군형법과 군법회의가 필요한 이유로 군사규율의 유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사건의 특수성을 들고 있다.

즉, ① 군대의 엄정한 규율의 유지를 위한 신속·간략한 기구가 필요하다. 군사범죄 등의 위법행위가 생긴 경우에 가능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증거보전의 어려움 및 진행 중인 작전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을 수 있다. ② 군사범죄의 재판에는 일반의 사법관 외에도 군사 전문가가 필요한데, 군사범죄의 사실관계파악과 범죄의 인정, 형량의 결정에 있어 법률지식에 더해 군대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군사지식을 겸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군대는 자국의 일반사법재판소의 소관외인 외국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 본국으로부터 떨어진 작전지역 등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국의 재판소가 현지에 진출하는 것은 통상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군사재판을 행할 필요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군대 독자적인 재판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⁰⁶

04 이렇게 병과가 가능한 이유는, 양자가 그 목적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즉,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은 당해행위가 동시에 반사회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이다.

05 군형법하에서는 징계처분과 형벌은 양쪽 모두 군기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06 奥平穰治, 前掲論文, 120-121頁.

Ⅲ. 과거 일본의 군사사법제도 검토

1. 메이지헌법 하에서의 군법회의 지위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천왕의 이름으로 재판소가 이것을 행사하며, 제2항에서 재판소의 구성은 법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제60조에서는 특별재판소의 관할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별재판소의 종류로 황실재판소, 행정재판소, 군법회의(군사재판소)가 있었다. 행정재판소는 행정부 내에 있었고, 군법회의는 군내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의 사법권을 가지는 재판소라 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중립성을 충분히 담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당시 메이지헌법 제24조에서는 신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만, 동 헌법 제32조에서 신민의 권리의무의 규정은 육·해군의 법령 또는 규율에 저촉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군인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졌다고는 말하기 힘들며, 육군성·해군성 내에 설치된 군법회의가 중립공정성을 흠결할 우려가 있어도 군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군법회의는 주로 군사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소였지만, 그 형사실체법은 형법, 군형법 및 군기보호법 등 그 외의 군사범죄를 정하는 법률이었으며, 형사절차법(형사소송법)은 군법회의법이었다. 그리고 당시 군형법은 단일의 법률이 아니라 육군형법과 해군형법으로 분리되어졌는데, 해군형법은 육군형법과 거의 동일하였다.⁰⁷

2. (구) 군법회의의 특징

(1) 재판권

군법회의법 또한 육군군법회의법과 해군군법회의법으로 분리 제정되었으며, 군법회의의 재판권은 크게 3종류가 있다. 즉 신분에 기한 재판권, 사물에 기관 재판권 및 장소에 기한 재판권이다.

먼저 신분에 의한 재판권은 군에 일정한 지위가 있는 자 또는 군과 일정의 관계가 있는

07 西村峰裕, 前掲論文, 5-7頁。

자의 범죄는 균형법범이며, 형법범이어서 군법회의에서 관할하였다. 예를 들면 종군기자나 카메라맨, 주보(酒保)상인 등은 선서를 하면 군속에 포함되어 균형법이 적용되지만, 선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에 일반인으로서 균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균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형사범이 되었다.

다음으로 사물에 기한 재판권으로 특정의 범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향군인(일종의 예비군)으로 군무에 종사하지 않고 일반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제복을 착용해서 균형법에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소에 의한 재판권으로 신분에 기한 재판권이나 사물에 기한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이더라도 합위지경(合圍地境)내에서 균형법 등에 위반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의 재판권이 미쳤다. 합위지경이란 적에 포위된 혹은 공격을 받는 등의 사변이 발생한 경우에 경계해야 할 지역을 구획한 것을 말한다. 만일 합위지경 내에 재판소가 없거나, 재판소가 있어도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형사 구별 없이 전부 군아(軍衙/군관청)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⁰⁸

(2) 구성원

군법회의는 판사(判士), 육군(해군)법무관, 육군(해군)녹사(綠事), 육군(해군)경사(警査)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판사는 육군에서는 병과(포, 공, 보, 기, 치중(轎重) 등의 전투 직종)장교로부터 임명된다. 판사는 군법회의의 재판관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며, 판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병과학교만이 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법회의의 재판을 부대지휘권의 발로로서 취급했다는 의미가 된다. 군인의 범죄는 반드시 군인이 재판하는 것으로 심판권과 군대지휘권을 일치된 것으로 한 것이다.

한편, 법무관은 사법관시보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무관시보로서 채용해서 1년 6개월 이상을 실무수습 시켜서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판사(判事), 검사(檢事) 혹은 이것과 동종의 그 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안 되었다. 법무관은 종신관이었다. 법무관은 소송상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았으며, 형사재판 혹은 징계처분

08 西村峰裕, 前掲論文, 7-9頁.

에 의한 것이 아니면 면관(免官) 또는 전관(轉官)되지 않는 신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정치 활동이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이나 제국의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것, 보수가 있는 공무에 취임하는 것 등은 금지되어져 있었다.⁰⁹

(3) 심판기관

군법회의의 심판기관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복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기관이다. 군법회의는 심판을 행함에 있어 다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재판기관을 구성하는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5명이며, 재판장은 상석의 판사가 맡게 된다.

한편, 유죄판결은 재판관이 피고인을 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기에, 육군군법회의의 재판관이 되는 병과장교 혹은 해군군법회의의 재판관이 되는 장교는 항상 피고인과 계급이 동등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군대는 명령의 하달에 의해 기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위 계급에 있는 자가 상위 계급에 있는 자를 비판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법회의는 부대장의 지휘통제권의 일부로서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상위 계급에 있는 자가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지휘해야 하는 계급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¹⁰

3. (구) 군법회의의 폐지 및 한계

지금까지 개관한 일본의 (구)군법회의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존재하였다. 그것은 군법회의가 설치된 부대에 있어 부대의 최고지휘관인 부대장 즉 군사령관, 사단장, 진수부장관 등이 당연히 군법회의의 장관을 겸무하였고 또한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군검찰을 지휘하였으며, 사법경찰권한까지도 전면적으로 장악하였다는 점이다. 중앙에서도 군정기관의 장인 육군대신, 해군대신은 각각 당연히 고등군법회의의 장관을 겸무하였고, 각각 군검찰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사법경찰권한을 전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군법회의의 체계는 주로 군법회가가 군인 또는 군속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소로서 군정기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군령기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09 西村峰裕, 前掲論文, 14-16頁.

10 西村峰裕, 前掲論文, 16-18頁.

형사재판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부대장의 지휘명령의 무오류성을 절대적인 전제로서 탄핵의 장을 단순히 사법(司法)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¹¹

IV. 현행 일본의 군사사법제도 검토

1. 현행 일본의 군사사법제도의 개관

(1) 현행 군사사법제도의 개요

현행 일본 헌법은 군대의 보유는 금지되어 있다(일본헌법 제9조 제2항). 또한 특별재판소의 설치도 금지되어 있었으며, 행정기관이 종심으로서 재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일본헌법 제76조 제2항).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로서 취급되고 있지만, 일본 국내법상으로는 군대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며,¹² 또한「자위대법」에서는 징계·벌칙의 규정은 있지만, 군형법은 아니다.¹³ 동법을 일반 공무원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규율과 동일한 내용의 것과 자위대 특유의 것도 존재하지만, 벌칙의 경중을 놓고 보면 자위대법이 더 무겁다.

자위대원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군법회의(군사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법절차는 수사→체포→검찰관송치→기소→재판→판결→집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위대원의 행위는 복무규율에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 처분을 근거지우는 것에 그치고 형벌을 과할 수는 없다. 자위대법의 형벌법규는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고유의 형벌법규로서 행정적 형벌법규가 아니며, 자위대법의 벌칙에서 정하는 죄는 통상의 군형법에 비해 종류가 적다.¹⁴

11 西村峰裕, 前掲論文, 23-25頁.

12 奥平穰治「軍の行動に関する法規の規定のあり方」防衛研究所紀要(防衛省)第10巻第2号(2007年)80-84頁.

13 安田寛「軍法と自衛隊法の罰則」防衛法研究(防衛法研究会)第8号(1984年)56頁.

14 奥平穰治, 前掲論文, 126-127頁.

(2) 현행 군사사법제도의 존재이유

이러한 현행 제도가 채택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헌법과 방위법제 체계상의 제약 때문이다.

즉, 자위대는 국내법상 군대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자위관 그 외 방위성직원은 특별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자위대의 전신이 경찰예비대와 보안대 등이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자위대원의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평시를 전제로 한 체계에서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¹⁵

(3) 군사법원의 도입 논의

현행 일본헌법 제76조 등의 제약에 의해 특별재판소로서 군사법원의 설치하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반 사법재판소가 가지는 한계점과 군대라는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즉, 통상 재판소의 경우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어 균율유지의 목적이 훼손되는 점, 군대의 특수성에 기인한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와 법률 양자의 전문지식의 겸비가 요구되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물론 현재 상태를 지지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재검토를 주장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군사법원 도입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는 가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통상재판소의 계열에 속하는 전문재판소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2. 자위대에 대한 복무규율

(1) 자위대의 자율성

전후 일본의 자위대의 규율유지는 사법기관인 군법회의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해 달성되어져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복무규율의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래 국가가 사용자로서 공무원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으나, 자위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대

15 奥平穰治, 前掲論文, 127-128頁.

16 西村峰裕, 前掲論文, 25-28頁.

장의 지휘통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위대의 복무규율은「자위대법」제46조 이하,「자위대원윤리법」,「자위대법시행규칙」제57~65조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자위대법 개요

「자위대법」제46조 제1항에서 대원이 ①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대원에 걸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③ 그 외 이 법률 혹은「자위대원윤리법」 또는 이러한 법률들에 기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강임, 정직, 감급 또는 계고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항에서 대원이 임용권자의 요청에 응하여 일반직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특별직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오키나와개발금융공고(公庫) 그 외 사업이 국가의 사무 혹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인 중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자가 되기 위해 퇴직하고, 계속해서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으로서 재직할 후, 계속해서 당해퇴직을 전제로 대원으로서 채용된 경우에는, 당해 퇴직까지 계속된 대원으로서 재직기간 중에 전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의 효과와 관련하여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강임은 계급 또는 직무의 급을 1계급 또는 2계급 밑의 직급 또는 직무의 급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정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정직자는 법령에서 별단의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감급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봉급의 50%이하를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현행 자위대윤리법 개요

「자위대윤리법」은 자위대원이 국민전체의 봉사로서, 그 직무는 국민으로부터 부탁된 공무를 감안하여 자위대원의 직무와 관련한 윤리의 유지에 힘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의 방지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자위대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와 관련한 윤리원칙으로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자위대원

은 항상 공사를 명확히 하며, 만일이라도 그 직무와 지위를 자기나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 내각은 매년 국회에 자위대원의 직무와 관련한 윤리의 견지에 관한 상황 및 자위대원의 직무와 관련한 윤리의 견지를 강구한 시책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 내각의 국가공무원윤리규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위대신에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은 자위대원윤리규정 및 훈령의 제정 또는 개폐를 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3. 현행 일본의 군사법제도의 한계

현행 일본의 자위대의 규율유지는 이렇듯 과거의 군법회의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복무 규율로 그 시프트가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경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국제평화협력활동의 진전으로 인한 한계이다. 자위대원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 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국외사건에 있어서의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평시에는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유효한 대처가 될 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관련 인재 확보의 한계로 법적 훈련을 받은 인재를 자위대원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¹⁷

17 奥平穰治, 前掲論文, 131-132頁.

V. 나오면서

군사사법제도는 균형법에 의한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 군대가 독자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군의 자율성에서 유래한다.

일본의 경우 과거 (구)군법회의가 육군과 해군에 각각 존재하였는데,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예로 군법회의가 설치된 부대에 있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부대장은 당연히 군법회의의 장관을 겸무하였고 또한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군검찰을 지휘하였으며, 사법경찰권한까지도 전면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그 공정성이 의문시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구)군법회의는 형사재판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부대장의 지휘명령의 무오류성을 절대적인 전제로서 탄핵의 장을 단순히 사법(司法)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패전 후 (구)군법회의는 폐지되고, 자위대에서의 사건사고는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수사·입건되고, 일반적인 사법재판소(형사법원)에서 심리되어져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자위대원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군법회의(군사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법절차는 수사→체포→검찰관송치→기소→재판→판결→집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행 일본에서 군사재판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현행 일본 헌법에서 군대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으며(일본헌법 제9조 제2항), 또한 특별재판소의 설치도 금지되어 있다(일본헌법 제76조 제2항)는 것이다. 전후 지금까지 일본의 자위대의 규율유지는 사법기관인 군법회의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해 달성되어져 왔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위대의 복무규율은「자위대법」제46조 이하,「자위대원윤리법」,「자위대법시행규칙」제57~65조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일본의 자위대의 규율유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자위대원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국외사건에 있어서의 한계가 지적된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가 유사시에도 유효한 대처가 될 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훈련을 받은 인재를 자위대원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奥平穰治「軍の行動に関する法規の規定のあり方」防衛研究所紀要（防衛省）第10巻第2号（2007年）.

奥平穰治「防衛司法制度検討の現代的意義 -日本の将来の方向性-」防衛研究所紀要（防衛省）第13巻
第2号（2011年）.

西村峰裕「わが国における軍事司法の可能性」産大法学（京都産業大学）第39巻第1号（2005年）.

安田寛「軍法と自衛隊法の罰則」防衛法研究（防衛法研究会）第8号（1984年）.